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0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안 제74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 제1항).

Ⅲ. 검토의견

1.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해야 함. 다만, 심의회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u>협의</u>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해야 함. 다만, 심의회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u>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u>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74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1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제2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제3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제4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심의회는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기금사업과 관계 있는 기관 등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7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의회 미설치의 기준 및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관리·

-
- 1)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총 67개의 기금 중 심의회가 설치된 기금은 55개이고,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기획재정부 소관의 외국환평형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양곡증권정리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발전기금, 여성가족부 소관의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2개임.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구 분		내 용
사회보험성 기금 (6)	설치 (6)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상기금
계정성기금 (6)	설치 (3)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미설치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금융성기금 (7)	설치 (6)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미설치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 (48)	설치 (40)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국유재 산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 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 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 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구 분		내 용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 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 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 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주택도 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 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원자력기금
	미설치 (8)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금운용심의회를 미설치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심의회 미설치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기금 관리·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절차가 추가될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심의회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은 국회에 보고 중으로 사후 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으므로, 심의회 설치여부까지 승인을 받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라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심의와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는 별개의 문제로,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 및 일정 범위 이상의 지출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심의하는 반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보다 세부적인 항목까지 심의한다는 차이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른 승인절차는 일회성으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사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볼 수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u>협의하여</u>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 ----- ----- ----- ----- ----- ----- --- <u>협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u> <u>회의 승인을 받아</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60